

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란?



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에 대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**저소득 위기가구 대상으로 한시(1회) 긴급 생계비**를 지원합니다.

지원대상

코로나19로 인한 가구소득(근로·사업)

25% 이상 감소 등으로 생계가 곤란한 경우

1. 가구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%이하이면서 최근('20. 7월~신청월) 근로·사업소득이 비교기간*의 근로·사업소득 보다 25% 이상 감소한 가구

* 비교기간: '19년 월평균소득, '19년 7~9월 월소득 또는 평균소득, '20년 1~6월 평균소득 등 기간 중 택일

2. '20년 2월 이후 실직으로 구직(실업)급여를 받다가 종료된 가구

가구구성

'20. 9. 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

- '20. 9. 9일 현재 사망, 말소자, 거주불명자, 외국인, 재외국민은 제외
- 주민등록을 탈리하는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는 가구원에 포함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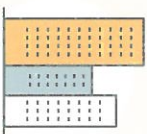
소득기준

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75% 이하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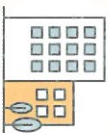
단위: 만원

가구원 수	1인	2인	3인	4인	5인	6인
기준 중위소득 75%	131.8	224.4	290.3	356.2	422.1	488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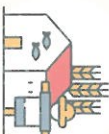
재산기준



대도시
6억원



중소도시
3.5억원



농어촌
3억원이하

제외대상

- 기초생활보장(생계급여), 긴급복지(생계지원) 대상자
- 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대상자
- (긴급고용안정지원금, 소상공인 세희망자금, 폐업점포 제도전장려금,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,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참여자, 구직급여대상자, 택시(법인/개인) 등)

신청방법 및 결정



온라인(인터넷, 모바일)

복지로(www.bokjiro.go.kr)

세대주만 신청 가능(휴대전화 본인인증)

'20. 10. 12.(월) ~ 10. 30.(금)



현장 방문

읍면동 주민센터

세대주, 가구원, 대리인 신청가능

'20. 10. 19.(월) ~ 10. 30.(금)

출생연도 끝자리로 '요일제' 운영

월	화	수	목	금	토	일
1, 6	2, 7	3, 8	4, 9	5, 0	홀수	짝수

※ 토·일, 공휴일은 현장방문 신청불가

지원금액

단위: 만원

구분	1인	2인	3인	4인 이상
지원금액	40	60	80	100

* 시군구는 신청인원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 ①가구소득 낮은 순 ②소득감소를 높은 순 ③연소득 낮은 순 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.